

## 「투자자문계약서」약관 개정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 고
투자자문 계약서	투자자문 계약서	
<p><b>제 1 조(목적)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2 조(투자자문 계약)</b>  <u>② 은행은 본 계약 체결 후 손님에게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 손님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 3 조(계약의 유효기간)</b>  <u>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손님과 은행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.</u>  <u>② 은행은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손님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“손님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손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 <u>③ 손님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</u></p>	<p><b>제 1 조(목적)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2 조(투자자문 계약)</b>  <u>② 은행은 본 계약 체결 후 손님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손님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 3 조(계약의 유효기간)</b>  <u>① 본 계약의 효력은 손님과 당행이 계약서에 날인한 시점부터 발생한다.</u>  <u>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손님과 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.</u>  <u>③ 은행은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손님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“손님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손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변경</b> 투자자문 업무편람와 문구 통일</p> <p><b>변경</b> 기본 계약기간 명확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</p> <p><b>제 4 조(투자자문의 대상)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5 조(투자자문의 범위)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6 조(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방법)</b></p> <p><u>① 부동산 투자자문자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</u></p> <p>1. 매입 및 매각 자문: 매매금액</p> <p>2. 관리 또는 임대 자문: 환산보증금[보증금 + (월임대료 X100)]</p> <p>3. 기타 자문: 기준시가, 개별부동산가격, 감정평가액, 시장가치평가액 중 손님과 합의한 금액</p> <p><u>② 부동산 이외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,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님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자문자산액으로 본다.</u></p>	<p>④ 손님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</p> <p><b>제 4 조(투자자문의 대상)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5 조(투자자문의 범위)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6 조(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방법)</b></p> <p><u>부동산 투자자문자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</u></p> <p>1. 매입 및 매각 자문: 매매금액</p> <p>2. 관리 또는 임대 자문: 환산보증금[보증금 + (월임대료 X100)]</p> <p>3. 기타 자문: 기준시가, 개별부동산가격, 감정평가액, 시장가치평가액 중 손님과 합의한 금액</p> <p><u>4. 지상권,지역권,전세권,임차권,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: 기준시가, 개별부동산가격, 감정평가액, 시장가치평가액 중 손님과 합의한 금액</u></p>	<p><b>변경(금투협회 의견 반영)</b></p> <p>기타자문과 부동산 관련 권리의 산정방법 통일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<b>제 7 조(투자자문의 제공방법 및 시기)</b></p> <p>① 은행은 투자자문담당자가 판단한 합리적인 투자방안에 근거하여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, 가치판단, 활용방안 등을 결정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② 은행은 서면, 대면, 팩스, 구두 및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 등 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③ 투자자문의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완료 전까지 1 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손님이 요청하는 시점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점으로 한다.</p> <p><u>④ 은행은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제 8 조(투자자문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)</b></p> <p>② 은행은 투자자문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 업무를 운영한다.</p> <p><u>4. 투자자문보고서 제출</u></p> <p><u>은행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한 후 투자자문 완료 전까지 1 회 이상 투자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손님에게 제출하고 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.</u></p>	<p><b>제 7 조(투자자문의 제공방법 및 시기)</b></p> <p>① 은행은 투자자문담당자가 판단한 합리적인 투자방안에 근거하여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, 가치판단, 활용방안 등을 결정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② 은행은 서면, 대면, 팩스, 구두 및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 등 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③ 투자자문의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완료 전까지 1 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손님이 요청하는 시점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점으로 한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<b>제 8 조(투자자문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)</b></p> <p>② 은행은 투자자문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 업무를 운영한다.</p> <p><u>4. 투자자문 결과 보고</u></p> <p><u>은행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한 후 투자자문 완료 전까지 1 회 이상 서면, 대면, 팩스, 구두 및 유무선 통신, 전자우편 등 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수행 결과를 손님에게 제공하고, 손님의 의견을 청취한다.</u></p>	<p><b>삭제</b></p> <p>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으로 제 9 조로 이전</p> <p><b>변경</b></p> <p>현 업무 절차와 일치 필요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<b>제 9 조(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)</b>  은행은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손님간, 특정 손님과 다른 손님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<u>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<b>제 10 조(투자자문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)</b>  ① 은행은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수령한다.  1. 투자자문수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투자자문자산액을 기준으로 2.0%(부가가치세 별도) 범위 내에서 자문유형, 자산의 규모 종류, 자문업무의 범위 및 운용방법에 따라 손님과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한다. 다만 손님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.  <u>2. 제 1 호에 불구하고 자문유형의 특성에 따라 손님과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제 1 호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투자자문수수료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 11 조(투자자문담당자)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12 조(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) &lt;생략&gt;</b></p>	<p><b>제 9 조(이해상충의 방지)</b>  ① <u>은행은 투자자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공정한 관리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u>  ② <u>은행은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</u></p> <p><b>제 10 조(투자자문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)</b>  ① 은행은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수령한다.  1. 투자자문수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투자자문자산액을 기준으로 2.0%(부가가치세 별도) 범위 내에서 자문유형, 자산의 규모 종류, 자문업무의 범위 및 운용방법에 따라 손님과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한다. 다만 손님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.  <u>2. 제 1 호에 불구하고 자문유형의 특성에 따라 손님과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투자자문수수료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제 11 조(투자자문담당자)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12 조(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) &lt;좌동&gt;</b></p>	<p><b>변경</b>  이해상충 문구 보완  제 7 조의 내용 이전</p> <p><b>변경</b>  업무편람과 내용 일치</p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제 13 조(은행의 행위제한) &lt;생략&gt;</p> <p>제 14 조(손님의 의무 및 책임)</p> <p>① 손님은 투자자산의 변동,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은행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, 손님의 통지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<u>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</u></p> <p>② <u>손님은 은행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직접 투자자문자산을 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며 투자자문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은행을 통해서만 한다.</u></p> <p>③ 은행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투자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손님의 판단과 책임하에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투자자문으로 발생한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과 손익은 손님에게 귀속된다.</p> <p>제 15 조(계약의 변경) &lt;생략&gt;</p> <p>제 16 조(청약의 철회) &lt;생략&gt;</p> <p>제 17 조(계약의 해지) &lt;생략&gt;</p>	<p>제 13 조(은행의 행위제한) &lt;좌동&gt;</p> <p>제 14 조(손님의 의무 및 책임)</p> <p>① 손님은 투자자산의 변동,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은행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, 손님의 통지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은행은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은행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투자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손님의 판단과 책임하에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투자자문으로 발생한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과 손익은 손님에게 귀속된다.</p> <p>제 15 조(계약의 변경) &lt;좌동&gt;</p> <p>제 16 조(청약의 철회) &lt;좌동&gt;</p> <p>제 17 조(계약의 해지) &lt;좌동&gt;</p>	<p><b>변경(금투협회 의견반영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공정위는 회사의 면책범위를 엄격하게 심사</li> <li>- 고객이 제 3 의 자문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, 고객의 직접 운용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</li> </ul>

현행	개정(안)	비 고
<p>제 18 조(신의성실의무) &lt;생략&gt;</p> <p>제 19 조(비밀유지의무) &lt;생략&gt;</p> <p>제 20 조(분쟁의 해결) &lt;생략&gt;</p> <p>제 21 조(특약사항)  <u>손님과 은행이 합의한 특약사항은</u>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 <p>[별지] 투자자문 계약 내용</p> <p>5-08-0476(6-3) (2022.05 개정)  (보존년한 : 작성일로부터 10 년)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2-약관-082 호(2022.05.02)</p>	<p>제 18 조(신의성실의무) &lt;좌동&gt;</p> <p>제 19 조(비밀유지의무) &lt;좌동&gt;</p> <p>제 20 조(분쟁의 해결) &lt;좌동&gt;</p> <p>제 21 조(특약사항) &lt;좌동&gt;  <u>손님과 은행이 합의한 특약사항([별지] 투자자문 계약 내용 포함)</u>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 <p>[별지] 투자자문 계약 내용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개정&gt;</u></p>	<p>변경  특약사항에 별지 포함</p>